

# 국내운송약관

GENERAL CONDITIONS OF CARRIAGE  
FOR DOMESTIC PASSENGER AND BAGGAGE



## 제1장 총 칙

### 1.1 정 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1.1 회사

플라이강원 주식회사

#### 1.1.2 국내운송

유상 또는 무상으로 행하는 여객 또는 수하물의 운송 계약상 그 출발지, 목적지 및 도중 착륙지가 대한민국 영토 내에 위치하는 항공운송

#### 1.1.3 여객

승무원을 제외하고, 운송인의 동의 하에 항공기로 운송되었거나, 운송될 사람

#### 1.1.4 태리프 (Tariff)

회사가 여객 및 수하물 운송에 적용하는 운임, 요금 및 요금과 동 운송에 관련된 규정 및 절차. 이는 본 운송 약관의 일부를 구성한다.

#### 1.1.5 항공권

회사 또는 회사가 지정한 대리인(이하 "대리점"이라 칭한다)이 본 운송 약관에 따라 국내 운항 노선상의 여객운송을 위하여 발행한 회사의 데이터베이스에 기록된 전자 항공권 및 전자 쿠폰

#### 1.1.6 전자 쿠폰

전자 탑승용 쿠폰 또는 회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고 있는 관련 정보

#### 1.1.7 통상 운임

할인되지 않은 여객운임

**1.1.8 수하물**

여객이 자신의 여행과 관련하여 착용, 또는 사용하거나 안락 또는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물품, 용품 및 기타 휴대품을 의미,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위탁수하물 및 휴대수하물을 포함

**1.1.9 위탁수하물**

여객이 유효한 항공권과 함께 제출한 물품에 대해 회사가 접수하고 수하물표를 발행한 수하물

**1.1.10 휴대수하물**

위탁수하물 이외의 수하물

**1.1.11 수하물표**

위탁수하물의 운송을 위하여 회사가 발행하는 증표

**1.1.12 단체 여객**

사전에 동일 단체로 예약이 신청되고 동시에 동일 구간을 여행하는 10명 이상의 승객

**1.1.13 성인**

만 13세 이상의 여객

**1.1.14 소아**

만 2세 이상 만 13세 미만 여객 (유아 만 2세 미만)

**1.1.15 SDR (Special Drawing Right)**

국제통화기금(IMF)에서 정한 특별인출권

## 1.2 약관의 적용

- 가. 이 운송 약관은 회사의 제 여객 운송 약관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한 국내선 정기, 부정기 여객 및 수하물의 운송 또는 이에 부수되는 모든 업무에 적용한다. 다만, 전세 운송에 대하여는 별도의 전세운송계약이 우선하여 적용되며, 전세운송계약이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운송 약관을 적용한다.
- 나. 이 운송 약관의 일부 조항에 관하여 특약을 한 경우에는 당해 조항에 우선하여 그 특약이 적용된다.
- 다. 여객 및 수하물의 운송은 여객의 여행 개시 당일에 유효한 운송약관 및 이에 의거하여 정하여진 규정에 따른다.
- 라. 여객이 운임을 지불하지 않는 무료 운송에 관하여 회사는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운송 약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적용을 배제할 권리를 가진다. 단, 그러한 경우에도 회사는 대한민국 상법에 따라 항공 운송인의 책임을 부담한다.
- 마. 회사의 운송약관 및 이에 의거하여 정하여진 규정은 법령 개정이나 정부 지침, 서비스 개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다. 그 외의 사유로 위 운송약관 등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 시행 전 발권한 승객에게는 변경된 운송약관 등을 적용하지 않는다.

## 1.3 비 치

플라이강원의 지점 또는 영업소 등은 여객운송약관, 여객운임, 요금 등을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 1.4 여객의 동의

- 가. 여객은 플라이강원의 국내선 항공권을 구입함으로써 이 운송약관 및 이에 의거하여 정하여진 규정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된다.
- 나. 1.2절 가항의 단서 규정에 의해 여객이 전세운송계약에 의한 운송을 수락하는 경우에는 이 운송 약관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 1.5 준거법 및 재판 관할

- 가. 이 운송 약관은 대한민국의 법에 따라 해석되며, 이 운송약관 및 관련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법률을 적용한다.
- 나. 이 운송 약관에 의거하여 행하는 운송과 관련된 소송은 그 손해배상 청구권자가 누구인가를 막론하고, 또한 그 손해배상 청구의 법적 근거 여하를 불문하고 대한민국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며 그 소송 절차는 대한민국 법률에 의한다.

## 1.6 항공사 직원의 지시

여객은 항공기 승강, 공항 또는 항공기내에서 행동 및 수하물 탑재 또는 하기 등 항공기 이용과 관련된 행위에 대하여 플라이강원 직원의 정당한 지시 또는 요구에 따라야 한다.

## 1.7 항공편의 스케줄, 지연 및 취소

### 1.7.1 스케줄

- 가. 시간표 또는 기타 유인물 등에 표시되는 시간은 예정에 불과한 것으로서, 보장되는 것이 아니며 운송 계약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도 아니다. 스케줄은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회사는 항공편 연결에 대하여도 일체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회사는 시간표 또는 기타 스케줄 표시상의 오기 또는 누락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치 아니한다. 발착 일시 또는 항공편 운항에 관한 플라이강원(이하 "회사") 직원, 대리인 또는 대표자의 여하한 진술 또는 표시도 회사를 구속할 권한을 갖지 아니한다.
- 나. 예약 시 회사는 여객에게 예약 시점에 유효한 예정된 운항시간을 통보하고 항공권 발권 시 항공권상에 명시한다. 항공권이 발행된 후에도 예정된 운항시간은 변경될 수 있으며, 플라이강원은 여객으로부터 제공받은 연락처로 그러한 변경사항을 통보한다. 이 경우 잘못된 연락처의 제공, 연락처 변경 후 미 고지 등 여객의 귀책사유에 따른 통보의 미 도달로 인한 승객의 불이익에 대하여는 회사가 책임지지 아니한다. 항공권을 구입한 이후에 운항시간이 변경되었으나 여객이 수용하지 않고, 회사가 여객의 수용 가능한 대체편을 예약하지 못한 경우 2.13절 다항에 따라 환불한다.

### 1.7.2 지연 및 취소

가. 회사는 예고 없이 운송인 또는 항공기를 변경 대체할 수 있다.

나. 회사는 아래와 같은 경우 예고 없이 항공편, 후속 항공편 또는 예약을 취소, 중지, 변경, 연기 또는 지연시킬 수 있으며 또한 이착륙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본 운송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권의 미사용 부분에 대한 운임 및 요금을 환불하는 이외의 여하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단, 회사의 고의 과실로 인한 운송의 불이행 및 지연의 경우, 회사는 관련 운송약관, 규정, Tariff 및 법규에서 정한 기준에 의거 배상을 행한다

- 1) 실제 발생하고 있거나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혹은 발생이 보고된 것으로서 운송인의 통제 능력 하에 있지 않은 사실 (기상조건, 천재지변, 운송인이 예측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기기의 고장, 파업, 폭동, 소요, 출입항 금지, 전쟁, 적대행위, 동란 또는 국제관계의 불안정, 기타 불가항력적인 상황 등을 포함하되 이에만 한정되지 아니한다.) 또는 그러한 사실에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기인하는 지연 요구, 조건, 사태 또는 지시
- 2) 예측, 예기 또는 예지하지 못한 사실
- 3) 법령, 정부의 규정, 명령, 요구 또는 지시
- 4) 노동력, 연료 혹은 설비의 부족, 플라이강원 또는 타사 인력 상의 문제 등의 경우

## 제 2 장 여 객

### 2.1 항공권의 발행

- 가. 플라이강원은 여객이 정해진 운임 또는 요금을 지불하거나 또는 플라이강원에서 별도로 정하는 신용거래 조건에 의하여 항공권을 발행한다.
- 나. 적용 Tariff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운임 또는 요금을 판매 통화로 환산하기 위해서는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환율을 사용한다.
- 다. 여객은 항공권 발행에 필요한 성명, 성별, 연락처 등의 정보를 플라이강원에 제공해야 한다.

### 2.2 항공권의 유효성

- 가. 항공권은 명의자만이 사용할 수 있으며,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 나. 항공권은 항공권상에 표시된 운송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유효하다.
- 다. 전자 쿠폰 상의 예약 등급 (Booking Class)과 해당 승객의 예약 기록 (Passenger Name Record: PNR)상의 예약 등급은 일치하여야 한다. 상기 예약 등급이 상이한 경우, 해당 승객의 탑승이 거절될 수도 있으며, 정해진 차액을 징수 시에 한해 탑승이 허용될 수 있다.
- 라. 여객이 항공권을 부정 사용하거나 운송증권상의 기재사항에 대해 여객이 허위 또는 부실 정보를 기재·입력 하거나 기재·입력 하게 한 경우에는 이로 인해 여객 자신 또는 제3자에게 발생하는 일체의 손해에 대하여 플라이강원은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 마. 특정 기간의 운송을 위하여 발행된 항공권은 당해 항공권 발행 당시의 운임이 적용되는 구간 및 기간 내의 운송에만 유효하다.

### 2.3 유효기간

- 가. 운임 규정상 유효기간이 별도로 지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항공권은 여객의 운송 개시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며, 일부도 사용되지 않은 항공권은 해당 항공권의 발행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다. 단, 유효기간 계산시 운송 개시일 또는 항공권 발행일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 나. 유효기간이 만료된 항공권은 사용이 불가하며, 유효기간의 연장도 불가하다.

## 2.4 운임 및 요금의 적용

- 가. 여객 운임 및 요금은 플라이강원에서 별도로 정한 운임 및 요금표에 의한다.
- 나. 적용 운임 및 요금은 여객이 여행하는 당일에 유효한 운임 및 요금으로 한다.
- 다. 지불된 운임, 요금이 적용된 운임 또는 요금과 상이한 경우에는 그 차액을 환불 또는 추징한다.
- 라. 여객이 지불하는 운임 또는 요금 계산시 100원 미만의 단수액은 계산하지 아니하며, 할인 적용시 100원 미만의 할인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 2.5 무임 및 할인

- 가. 성인에 의해 동반되고 좌석을 점유하지 않는 유아는 성인 1인당 1인에 한하여 무임으로 한다.
- 나. 가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좌석을 점유하는 유아 또는 성인 1인이 동반하는 유아 중 1인을 초과하는 유아는 운임 적용시 소아로 간주한다.
- 다. 개인 여객은 플라이강원에서 별도로 정한 대상 및 할인을 표에 의거하여 성인 통상운임에서 할인을 적용 받을 수 있다. 단, 여객은 탑승 이전에 플라이강원에 정당한 할인 대상자임을 증명해야 하며, 탑승 후에는 소급하여 할인을 적용 받을 수 없다.
- 라. 10명 이상 단체 여객은 탑승구간, 일자, 시간에 따라 플라이강원에서 별도로 정한 조건 하에서 운임 및 요금을 협의할 수 있다.

## 2.6 2개 이상 좌석 사용 시의 운임

여객이 신체 또는 기타 사유로 2개 이상의 좌석을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초과 좌석 1좌석당 당해 탑승 구간 성인 통상 운임의 100% 상당액을 적용한다.

## 2.7 세금, 이용료 및 요금 등

- 가.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에 의거하여 플라이강원이 정한 운임 및 요금에 부가하여 징수한다.
- 나. 정부 당국 또는 공항 운영자에 의하여 부가되어 여객으로부터 징수하는 세금, 이용료 및 요금은 회사가 정한 운임 및 요금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회사가 여객으로부터 징수하는 서비스 수수료 또는 이용료, 기타 사정변경으로 발생하는 요금 등의 기타 요금 또한 같다.



## 2.8 예약 및 사전 좌석 배정

- 가. 좌석 예약은 항공편 출발 예정 361일 전부터 접수하며, 항공권상에 확약으로 명시되어 있을 경우에만 당해 예약이 유효하다. 여객이 예약 신청 후 회사가 지정하는 시간까지 항공권을 구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예약은 탑승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예고없이 취소된다.
- 나. 여객이 동일한 예약 기록 내 둘 혹은 그 이상의 확정된 예약을 하여 아래의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 회사는 여객이나 여객의 대리인에게 사전 고지없이 고객의 예약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 1) 탑승구간 및 탑승일자가 동일한 경우
  - 2) 탑승구간이 동일하고, 해당하는 각각의 탑승일자가 가장 빠른 탑승일로부터 7일 이내이며, 여객이 예약한 항공편을 모두 탑승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3) 상기 1) 및 2)의 경우 외에 당해 여객이 예약한 항공편을 모두 탑승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다. 예약 제도가 운영되지 않는 구간 또는 항공편의 경우에는 가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다만 출발지 공항에서 탑승수속을 위하여 항공권을 제시하는 순서에 따라 여객 및 그의 수하물 운송을 인수한다.
- 라. 동일일자 동일편에 10명 이상의 단체 예약은 별도 요청에 의하여 접수, 처리된다.
- 마. 사전 배정 좌석은 항공편의 취소, 지연, 기종의 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회사는 항공기내 특정 좌석의 배정을 보장하지 아니한다.

## 2.9 여정의 변경

- 가. 항공권에 기재된 일자, 항공편, 구간 또는 목적지를 변경코자 할 때는 탑승 예정편 출발 이전에 회사 또는 대리점에 당해 변경이 요청되고, 좌석의 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 운송약관 및 이에 의거하여 정하여진 규정에 따라 변경한다.
- 나. 여객측 사정 이외의 사유로 인해 회사가 항공편을 취소하거나, 여객의 확정된 좌석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예정 기항지에 착륙하지 못할 경우 운항시간표에 따라 정상적으로 운항하지 못한 경우 회사는 다음의 조치를 취한다.
- 1) 여객 및 수하물을 좌석 제공 가능한 타 항공편 또는 타 운송수단으로 운임 추징없이 목적지까지 운송하거나
  - 2) 여객 요청에 따라 여행 일자, 항공편 또는 경로를 변경하거나
  - 3) 이 운송약관 2.13절 다항 및 기타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환불을 행한다.

## 2.10 여객의 공항 도착

### 2.10.1 탑승수속을 마치지 못한 여객

- 가. 여객은 좌석이 확보된 항공편의 출발 예정 시각 이전에 충분한 여유를 두고 관련 기관 및 플라이강원의 탑승수속을 마쳐야 하며, 플라이강원은 항공편 출발 예정 시각 20분 전까지 탑승수속 (좌석 배정 및 수하물 위탁)을 마치지 못한 여객에 대하여 탑승을 거절할 수 있다.
- 나. 공항에 늦게 도착한 승객의 수속 완료를 기다리기 위하여 소정 출발 시각을 지연시킬 수 없으며, 플라이강원은 이러한 여객에 대하여 이 운송약관 2.13절 나항에 의한 환불 이외의 여하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 2.10.2 운송 거절 권리

- 가. 플라이강원은 특정 여객에게 운송을 제공하지 않을 것임을 그의 합리적인 판단에 근거하여 통고한 이후에는 당해 여객 및 수하물의 운송을 거절할 수 있다
- 나. 플라이강원은 아래의 사실이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경우 여객 및 수하물의 운송을 거절하거나 도중 지점에서 하기(下機) 조치할 수 있다.
  - 1) 여객의 인명 또는 재산의 안전을 위한 정부기관 또는 플라이강원의 지시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 2) 정부의 적용 법률, 규정 또는 명령의 준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3) 여객 또는 수하물의 운송이 타 여객이나 승무원의 안전, 건강에 위해를 끼치거나 안락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 4) 여객이 탑승권 발급 등 탑승수속 시 위협적인 행동, 공격적인 행동, 욕설 또는 모욕을 주는 행위, 소란행위 등을 한 경우
  - 5) 주류, 약물로 인한 손상을 포함하여, 여객의 정신적, 신체적 상태가 여객 자신, 타 여객, 승무원 또는 재산에 유해하거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
  - 6) 반려동물(장애인보조견 제외)이 크게 짖는 등 지속적으로 소음을 발생시켜 주는 승객의 안락한 여행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
  - 7) 여객이 이전(以前)의 어느 항공편 탑승 중 안전운행을 저해하거나 타 여객에게 불편 또는 불쾌감을 초래하는 등의 부당행위를 하였고, 그러한 행위가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 8) 여객이 항공권의 명의인과 동일인 여부 확인 목적으로 플라이강원 또는 그의 지정 대리인이 요구하는 신분증 제시를 거부하거나, 본인임을 스스로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 9) 여객이 신체 또는 소유물에 대한 보안 검색을 거부하는 경우

- 10) 여객이 불법적으로 취득하였거나, 플라이강원 또는 그의 임명 대리점 이외의 자를 통하여 구입했거나, 분실, 도난 신고되었거나, 위조된 항공권을 제시하는 경우
- 다. 초과판매 또는 플라이강원(이하 "회사")에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항공기 허용 탑재량이 감소한 경우, 회사는 자발적 탑승 유예 여객을 유도할 수 있다. 비자발적 탑승 유예 여객을 최소화하기 위한 회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비자발적 탑승 유예 여객의 발생이 불가피한 경우 항공기 운항과 직접적인 직무를 담당하고 있지 않은 항공사 직원, 예약이 확약되지 않은 여객, 예약이 확약된 여객의 순으로 탑승 유예 대상자를 선정하고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보상한다. 단, 비동반 소아, 장애인, 임산부, 질환자 또는 기타 특별한 도움을 요하는 여객의 운송의 경우는 비자발적 탑승 유예 여객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된다.
- 라. 사전에 예견할 수 없었던 플라이강원에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항공기 허용 탑재량이 부득이하게 감소한 경우, 플라이강원은 변경된 항공기 허용 탑재량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하기할 최소한의 여객 또는 물품을 선정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플라이강원은 항공기 운항과 직접적인 직무를 담당하고있지 않은 항공사 직원, 예약이 확약되지 않은 승객, 예약이 확약된 승객의 순으로 탑승 유예 대상자를 선정한다. 단, 비동반 소아, 장애인, 임산부, 질환자 또는 기타 특별한 도움을 요하는 여객 운송의 경우는 비자발적 탑승 유예 승객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된다.
- 마. 위의 1) 내지 4)의 사유로 운송이 거절되거나, 도중에서 하기(下機)되는 여객에 대하여는 2.13절 다항에 의거하여 항공권의 미사용 부분에 대한 환불을 행한다.

### 2.10.3 조건부 운송 인수

- 가. 플라이강원은 여객의 상태, 연령 또는 정신적, 신체적 조건이 여객 자신에게 유해하거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할 경우, 그러한 상태, 연령, 정신적, 신체적 조건에 기인한 부상, 질병, 장애 또는 그의 악화나 여타 결과(사망을 포함)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는 명시적인 조건 하에 그의 적용 규정에 의거하여 운송을 행한다.
- 나. 비동반소아, 장애인, 임산부, 질환자, 기타 특별한 도움을 요하는 여객의 운송의 경우 플라이강원은 여객이 사전에 통보한 바에 따라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기 위하여 가능한 노력을 다한다. 단, 그러한 도움의 내용은 관련 법령 및 항공기 설비 등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
- 다. 여객이 장애 사실과 운송에 필요한 특별 요청사항을 플라이강원에 통보하여 운송이 합의된 이후에는 그러한 장애 사실과 특별 요청사항을 이유로 운송이 거절되지 아니한다.

**2.10.4 기내에서의 행위**

가. 플라이강원은 여객이 항공기 내에서 아래의 행위를 하는 경우 그러한 행위를 중지시키기 위하여, 신체 억류를 포함하여 필요하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당해 여객은 운항 중 어느 지점에서 하기(下機) 조치되거나 계속 여행이 거절될 수 있으며, 항공기 내에서의 행위로 인하여 고소(告訴)될 수 있다.

- 1) 항공기, 탑승 인원 또는 탑재된 재산에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
- 2) 기내에서의 제반 행위(흡연, 음주, 약물복용, 소란행위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아니함)에 대한 승무원의 정당한 지시,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
- 3) 타 여객 또는 승무원의 불안, 불편, 손해 또는 부상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나. 위의 1)에 언급한 행동의 결과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당해 여객이 책임을 부담한다.

**2.10.5 전자기기**

플라이강원은 항공기의 안전 운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자기기(휴대 전화기, 텔레비전, 컴퓨터, 녹음기, 라디오, CD 플레이어, 전자 게임기, 전자 조종 장난감, 송수신기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아니함)의 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2.11 부정 탑승**

다음의 경우는 부정 탑승 행위로 규정하고 탑승 구간에 적용되는 통상 운임의 2배 상당액을 여객으로부터 징수한다.

- 가. 무효항공권, 위조 항공권, 타인 명의 항공권 또는 타인이 분실한 항공권을 소지하고 탑승한 경우
- 나. 플라이강원의 국내선 여객 운임 할인대상자로 부정 신고하여 부당하게 할인을 받고 탑승한 경우

## 2.12 환 불

### 2.12.1 미사용 유효 항공권의 환불

- 가. 항공권에 대한 환불 신청은 해당 항공권의 유효기간 만료 전에 하여야 하며, 유효기간 만료일 이후 환불이 신청되는 경우에 플라이강원은 동 환불을 거절할 수 있다
- 나. 환불을 신청하는 자는 플라이강원의 지점, 영업소 또는 항공권을 구입한 대리점에 환불 의사를 전달해야 한다.
- 다. 환불은 항공권의 명의인 또는 환불받을 권한이 있다고 플라이강원이 별도로 인정하는 자에게 행한다. 단, 신용카드 (Credit Card) 또는 체크카드 (Debit Card)로 발행된 항공권은 당해 카드 계좌로 환불한다.
- 라. 환불을 위하여 제출한 서류상에 기재 또는 지정된 명의인에게 본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환불은 유효한 환불이며, 플라이강원은 이후 진정한 권리자에 대하여 또다시 환불해야 할 책임을 지지 않는다.

### 2.12.2 여객 사정에 의한 환불

일부도 사용되지 아니한 항공권은 지불 운임 전액에서 2.14절에 의한 예약부도 위약금 및 환불수수료를 구간당 공제한 금액을 환불하며, 일부를 사용한 항공권은 실제 지불한 운임 중에서 기 사용한 구간에 적용되는 운임, 미사용 구간에 적용되는 예약부도위약금 및 환불수수료를 구간당 공제하고 환불한다.

### 2.12.3 여객 사정 이외의 사유로 인한 환불

- 가. 플라이강원 사정에 의한 항공편의 취소, 여객의 예약된 좌석의 제공 불능, 항공편의 연결 불가능, 항공편의 연기 또는 지연, 예정 기항지의 생략, 또는 이 운송약관 1.8절 및 2.11절 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고객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배상하여야 한다.
- 나. 일부도 사용하지 아니한 항공권에 대하여는 지불한 운임 및 요금 전액을 환불한다.
- 다. 항공권상에 명시된 목적지로 운송 도중 어느 지점에서 취소되는 경우는 당해 취소 지점과 목적지 간에 취소 당일 유효한 운임 및 요금을 환불한다.

### 2.13 확약의 사전 취소 및 예약부도 위약금

- 가. 본인 사정으로 확약한 항공편을 탑승하지 아니하려는 여객은 당해 공항편, 출발 예정 시각 이전에 플라이강원의 지점 또는 영업소 등에 확약 취소를 통고하여야 한다
- 나. 당해 항공편 출발 예정 시각 이전에 상기 가항의 취소 통고를 행하지 아니하고, 확약한 항공편을 탑승하지 아니할 경우, 플라이강원이 별도로 규정한 예약부도 위약금을 구간당 징수할 수 있다.

## 제 3 장 수하물

### 3.1 위탁수하물 및 휴대수하물

여객이 플라이강원 공항사무소에 유효한 항공권과 함께 수하물을 제출할 경우에 이 운송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플라이강원은 위탁수하물 또는 휴대수하물로 운송한다.

### 3.2 수하물의 운송

위탁수하물은 여객과 동일한 항공편으로 운송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항공기 탑재량 문제, 또는 플라이강원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해당 수하물을 타 항공편으로 운송할 수 있다.

### 3.3 수하물의 내용 조사

항공 보안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플라이강원은 수하물의 내용을 여객 또는 여객이 지정하는 제3자의 입회 하에 조사할 수 있다.

### 3.4 수하물로서의 운송 제한 물품

가. 플라이강원이 사전에 별도로 인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래 물품은 여객의 수하물로 운송할 수 없다.

- 1) 법령 또는 정부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항공기에 탑재 이동이 금지된 물품
- 2) 항공기 탑승인원 또는 기타 재산에 위험이나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
- 3) 운송도중 파손되기 쉽거나 부적절하게 포장된 물품

나. 화폐, 은행권, 유가증권, 인지류, 보석류, 미술품, 견본, 서류 또는 기타 귀중품 등은 위탁수하물로서 운송할 수 없다.

### 3.5 여객의 무료 수하물 허용량

- 가. 위탁수하물은 일인당 15킬로그램까지 무료로 운송한다.
- 나. 휴대수하물은 기내 선반이나 좌석 밑에 여객이 직접 보관해야 하며, 3번의 합이 115cm 및 중량 10킬로그램 이하인 1개에 한해 무료로 기내 반입이 가능하다. 상기의 규격, 중량 및/또는 개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위탁수하물로 운송한다.
- 다. 적용 운임의 75% 이상을 지불한 소아 또는 유아의 위탁수하물 허용량은 성인 적용 운임을 지불한 여객과 동일하다. 또한, 이와 별도로 완전히 접을 수 있는 유모차 1개와 유·소아용 카시트 1개가 추가로 허용된다.
- 라. 이 운송약관 2.5절 가항에 정한 유아에 대하여는 본 조항 3.6절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단, 접을 수 있는 유모차 1개와 유아 운반용 요람 또는 유아용 카시트 중 1개에 한하여 무료 운송이 허용된다.

### 3.6 기내 휴대품

- 가. 일반석의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여객이 보관하는 경우에 3.5절 나항에 추가하여 무료로 기내 휴대가 가능하다.
- 1) 핸드백, 지갑 또는 소형 서류가방 1개
  - 2) 소량의 독서물
  - 3) 외투, 덮개 또는 모포
  - 4) 비행 중 사용할 유아용 음식물
  - 5) 소형카메라 및 쌍안경
  - 6) 신체장애 여객이 사용하는 완전히 접을 수 있는 휠체어, 목발, 받침목, 또는 의수, 의족 등의 보조기구
  - 7) 끝이 뾰족하지 않은 우산 또는 지팡이
  - 8) 노트북 컴퓨터 및 보관용 가방
- 나. 상기 품목 이외의 물품은 적용 법령, 정기 기관의 명령 또는 플라이강원의 규정에 의거, 별도로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내에 휴대할 수 없다.



### 3.7 초과수하물 요금

- 가. 3.5절에서 규정한 무료 수하물 허용량을 초과한 수하물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는 수하물 요금을 징수한다.
- 나. 초과 수하물 총 중량 산정 시 1킬로그램 미만 0.5킬로그램 이상의 중량은 1킬로그램으로 절상하고, 0.5킬로그램 미만의 중량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 3.8 초과수하물 요금의 환불

- 가. 플라이강원의 사정에 의하여 운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취소되거나, 여행 개시 전에 여객이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지불된 초과 수하물 요금 전액을 환불한다.
- 나. 여행 개시 후, 여객 사정으로 인해 여행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지불된 초과 수하물 요금은 환불되지 아니한다.

### 3.9 반려동물의 운송

- 가. 시각장애인 또는 청각장애인 보조견은 여객의 무료 수하물 허용량에 관계없이 아래 조건에 의거 무료 운송된다.
- 1) 여객이 동반하고, 별도로 좌석을 차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2) 타 여객에게 불편감을 주거나 안전 여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3) 운송도중 당해 동물의 질병, 부상 또는 죽음 등의 경우, 당해 손해가 플라이강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기인하지 아니하는 한, 플라이강원은 일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4) 당해 동물의 운송 도중 타 여객 또는 기타 재산에 미치는 손해는 여객이 전적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 나. 여객이 동반하는 반려동물은 아래 조건에 의하여 기내로 운송이 가능하다.
- 1) 반려동물은 개, 고양이 또는 애완용 새에 한한다.
  - 2) 반려동물은 반드시 별도의 운반용 용기에 수용되어 기내에 탑재되어야 한다.
  - 3) 플라이강원이 반려동물(장애인 보조견 제외)의 운송을 인수하는 경우 여객이 동반하는 반려동물 및 운반용 용기의 중량은 여객의 무료 수하물 허용량에 포함되지 않으며, 플라이강원 규정에 따라 서비스 요금을 별도로 부과한다.

### 3.10 증가 요금

증가요금을 적용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만약 증가요금 신고를 원하는 고객에 대해서는 운송이 거절될 수 있다

### 3.11 위탁수하물의 인도

- 가. 위탁수하물은 수하물표에 기재되어 있는 목적지에서 인도한다. 단, 특별히 여객의 요구가 있을 때는 상황이 허용되는 경우에 한하여 출발지 또는 중간지점에서도 인도할 수 있다.
- 나. 플라이강원은 수하물표의 소지자가 당해 수하물의 정당한 권리자 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의무를 지지 아니하며, 이를 확인치 아니함으로써 여객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다. 플라이강원이 본 조항에 의거하여 수하물 인도 시, 수하물 인수자가 소정 절차에 따라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치 아니하는 한, 당해 수하물은 양호한 상태로 운송 계약에 따라 인도된 것으로 간주한다.

### 3.12 수하물표의 분실

수하물표를 분실한 여객에 대하여는 그가 정당한 권리자로 인정되고 당해 수하물을 인도함으로써 플라이강원이 입을지도 모를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겠다는 보증 하에서만 당해 수하물이 인도될 수 있다.

### 3.13 미인도 수하물의 처분

위탁수하물 도착 후 1주일을 경과해도 여객으로부터 인도 요구가 없을 경우에는 플라이강원은 당해 수하물을 적의 처분할 수 있다. 단, 어류 및 기타 부패되기 쉬운 물품은 도착 후 48시간이 경과하면 적의 처분할 수 있다.

## 제 4 장 책 임

### 4.1 여객 운송에 대한 책임

- 가. 플라이강원은 여객의 사망 또는 신체의 상해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는 그 손해의 원인이 된 사고가 항공기 상에서 또는 승강을 위한 작업 중에 발생한 경우에만 책임을 진다.
- 나. 플라이강원은 가항의 손해 중 여객 1명당 128,821 SDR까지는 배상책임을 면제하거나 제한할 수 없다.
- 다. 플라이강원은 가항의 손해 중 여객 1명당 128,821 SDR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증명하면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1) 그 손해가 플라이강원 또는 그 사용인이나 대리인의 과실 또는 그 밖의 불법한 작위나 부작위에 의하여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
  - 2) 그 손해가 오로지 제3자의 과실 또는 그 밖의 불법한 작위나 부작위에 의하여만 발생하였다는 것.
- 라. 플라이강원은 여객의 연착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플라이강원이 자신과 그 사용인 및 대리인이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조치를 하였다는 것 또는 그 조치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 책임을 면한다.
- 마. 라항에 따른 플라이강원의 책임은 상법에 명시된 한도(여객 1명당 1,288 SDR)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 바. 플라이강원은 위탁수하물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그 손해의 원인이 된 사실이 항공기 상에서 또는 위탁수하물이 항공사의 관리하에 있는 기간 중에 발생한 경우에만 책임을 진다. 다만, 그 손해가 위탁수하물의 고유의 결함, 특수한 성질 또는 숨은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사. 플라이강원은 휴대수하물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그 손해가 자신 또는 그 사용인이나 대리인의 고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만 책임을 진다. 휴대수하물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항공사 직원의 여객에 대한 도움은 다만 여객에 대한 예우상의 서비스이다.
- 아. 플라이강원은 수하물의 연착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플라이강원 자신과 그 사용인 및 대리인이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조치를 하였다는 것 또는 그 조치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 책임을 면한다.

- 자. 플라이강원은 여객 자신의 수하물 내용품에 기인한 여객의 수하물에 대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여객은 자기 물품에 의하여 타 여객의 수하물 또는 플라이강원의 재산에 손해를 초래한 경우, 당해 여객은 플라이강원이 입은 일체의 손실 및 비용을 플라이강원에 배상하여야 한다.
- 차. 방향 내지 아항에 따른 플라이강원의 손해배상책임은 상법에 명시된 한도(여객 1명당 1,288 SDR)를 초과하지 아니하며, 배상 시 감가상각을 적용한다
- 카. 마항 또는 차항은 플라이강원 또는 그 사용인이나 대리인의 고의로 또는 여객의 연착이 생길 염려 내지 수하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이 생길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한 작위 또는 부작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이 증명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타. 플라이강원이 법령, 정부 규정, 명령 또는 요건을 준수함으로써, 플라이강원이 관리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또는 여객이 이들 법규에 따르지 않음으로써 직접 또는 간접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플라이강원은 일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파. 플라이강원의 책임과 관련된 배상금의 지불지는 대한민국으로 한다.
- 하. 나항을 포함하여 이 장에서 정한 플라이강원의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하여 플라이강원이 손해배상청구권자의 과실 또는 그 밖의 불법한 작위나 부작위가 손해를 발생시켰거나 손해에 기여하였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 과실 또는 그 밖의 불법한 작위나 부작위가 손해를 발생시켰거나 손해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플라이강원의 책임을 경감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 거. SDR의 환율은 소송의 경우에는 최종 법원의 판결일에 유효한 환율에 의하며, 소송 이외의 경우에는 지불하여야 할 손해배상금액이 합의된 날에 유효한 환율에 의한다.

## 4.2 위탁수하물의 일부 멸실, 훼손 등에 관한 통지

- 가. 여객이 위탁수하물의 일부 멸실 또는 훼손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위탁수하물을 수령한 후 지체없이 그 개요에 관하여 플라이강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그 멸실 또는 훼손이 즉시 발견할 수 없는 것일 경우에는 위탁수하물을 수령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 나. 위탁수하물이 연착된 경우 여객은 위탁수하물을 처분할 수 있는 날부터 21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여야 한다.
- 다. 가항의 통지와 나항의 이의 제기가 없는 경우에는 위탁수하물이 멸실 또는 훼손없이 여객에게 인도된 것으로 추정한다.
- 라. 가항과 나항의 기간 내에 통지나 이의제기가 없을 경우에는 여객은 플라이강원에 대하여 제소할 수 없다.

## 4.3 여객의 배상 책임

여객이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또는 이 운송약관 및 이에 의거하여 정하여진 규정을 준수치 아니함으로써 플라이강원이 손해를 입은 경우에 여객은 당해 손해를 플라이강원에 배상하여야 한다.

## 4.4 제소 기한

플라이강원의 여객에 대한 책임과 관련된 제소는 그 청구 원인에 관계없이 여객이 목적지에 도착한 날, 항공기가 도착할 날 또는 운송이 중지된 날 가운데 가장 늦게 도래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제기되어야 하며 그 기간 이후에는 플라이강원에 대한 여객의 제소권은 소멸된다.

## 4.5 약관의 정본

플라이강원의 국내여객운송약관은 국문판을 정본으로 한다.

## 4.6 표제

이 운송약관 각 조항의 표제는 편의를 위한 것이며 운송약관의 일부를 구성하지 아니한다.